

● 제299회 ●
서울특별시의회(임시회)
제3차 보건복지위원회

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2021. 3. 3.

보건복지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【박기재 의원 대표 발의】

의안번호 2212

I. 조례안 개요

1. 제안경위

- 가. 제출자 : 박기재 의원 대표 발의 (외 14명)
- 나. 제출일자 : 2021년 2월 5일
- 다. 회부일자 : 2021년 2월 8일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1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 시립병원의 경우 고령의 취약계층 및 감염병 환자, 노숙인 환자 치료 등 민간에서 꺼려하는 의료분야를 제공해야 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써 보다 전문적인 입원간호서비스가 요구되는 상황임.
-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보다 개선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호·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고 서비스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 수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환자의 안전관리 및 의료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.
- 코로나 19 등과 같은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으로 대면회의 등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비급여수가 심의위원회, 병원운영위원회 및 시민참여위원회 등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비대면회의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간호·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.(안 제5조의3 신설)
- 나.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의 경우 각종 위원회 회의를 원격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.(안 제24조 신설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의료법」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Ⅲ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이문성)

1 개정안의 취지

-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립병원의 간호·간병통합서비스 서비스 제공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 및 시민건강위원회의 비대면 회의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안되었음.

2 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

가. 간호·간병통합서비스의 지원(안 제5조의3 신설)

- 간호·간병통합서비스는 간호·간병통합서비스는 의료법 제4조의 21)에 따라 국민의 간병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병원에서 시행되는 입원서비스로 현재 8개의 968병상이 운영되고 있음.
 - 시립병원 전체 병상 중 약 33.4%에 해당함.2)

1) 제4조의2(간호·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) ① 간호·간병통합서비스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아니하고 간호사,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그 밖에 간병지원인력(이하 이 조에서 “간호·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”이라 한다)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서비스를 말한다.

2) 2021년에는 코로나 상황 지속으로 인해 간호·간병통합서비스 축소 운영으로 618병상 운영

〈 시립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력 운영 현황 〉

기관명	2020년 서비스 운영 병상 /전체병상(%)	배치 기준	
		간호사	간호조무사
소계	968 / 2,899 (33.4)	-	-
서울의료원	100 / 608 (16.4)	1:8	1:40
동부병원	173 / 201 (86.1)	1:10	1:25
보라매병원	381 / 765 (49.8)	1:8	1:30
서남병원	102 / 327 (31.2)	1:10	1:30
북부병원	40 / 200 (20.0)	1:10	1:30
어린이병원	112 / 210 (53.3)	1:12	1:40
은평병원	35 / 228 (15.4)	1:12	1:30
서북병원	25 / 360 (6.9)	1:10	1:30

- 「의료법」 제4조의2제7항³⁾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하여금 인력 수급,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음.
-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의3은 상위법을 반영하여 시장으로 하여금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인적, 물적 지원을 하도록 책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나. 원격회의(안 제24조)

- 현행 조례는 시립병원의 운영에의 자문, 시민참여와 수가 조정 등을 위하여 ‘병원운영위원회’⁴⁾, ‘시민참여위원회’⁵⁾, ‘비급여수가 심의위원회’⁶⁾를 두고 있으며 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

3) 제4조의2(간호·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)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·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·확대, 간호·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4) 제12조(병원운영위원회) ① 수탁자는 병원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병원에 병원운영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5) 제14조(설치·운영) ① 병원장은 시민과 환자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시민참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례에서 규칙 혹은 병원별 운영세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.

〈 위원회별 운영 〉

	비급여수가 심의위원회	병원운영위원회	시민참여위원회
구성	5~15	5~9	20인 이내
기능	건강보험 진료수가에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수가 등 심의	수탁병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	시민과 환자의 권리보장에 관한 자문
운영	규칙으로 정함	-	연1회 이상 개최

- 최근 3년간 각 위원회별 개최 실적을 보면 ‘비급여수가 심의위원회’는 연1회 대면회의로 진행된 바 있으며, ‘병원운영위원회’는 대면회의와 서면회의를 혼용하여 운영하였고 ‘시민참여위원회’의 경우 대면회의로 진행하던 것을 2020년에는 감염병 확산 등의 이유로 일부 회의를 서면으로 진행한 바 있음.

〈 위원회별 개최실적 〉

위원회명 연도별	개최 방법	비급여 수가위원회	병원 운영위원회	시민 참여위원회
2018	대면	1회	7회	25회
	서면	-	6회	-
2019	대면	1회	11회	25회
	서면	-	4회	-
2020	대면	1회	5회	8회
	서면	-	9회	7회

- 그러나 서면회의의 경우 안전에 대한 논의 및 토론 없이 위원 개인별 서면검토 후 결론을 도출하게 됨으로 안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불가능한 단점이 있음.

6) 제7조(비급여수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) ① 제6조제3항에 따른 비급여수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비급여수가 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- 서면심의의 경우 각 위원이 안건에 대한 가부(可否)를 통보하여 다수결로 결정하게 됨으로 소수의견이나 대안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위원회의 의결에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.
- 현행 조례에서는 회의 운영 방식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규칙에 위임하고 있으나 민주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서는 대화와 토론에 대한 기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므로, 감염병 및 천재지변과 같은 특수 상황에서도 심도 있는 회의가 가능하도록 회의 운영 방식을 비대면 원격회의가 가능하도록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임.

3 종합의견

-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「의료법」 제4조의2제7항에 따라 간호·간병통합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입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, 서울시립병원의 운영에 관한 각종 위원회의 회의운영 방식으로 비대면 원격 회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바 상위법의 반영 및 각종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.

문 의 처
김현정 입법조사관 (02-2180-8155)